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03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의자 : 안철수 · 이현승 · 조승환

김상훈 · 송석준 · 신성범

진종오 · 김민전 · 강민국

이만희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의 압류금지 재산과 농업에 필요한 기계 · 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등 3종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농 ·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의수족 · 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소방설비 등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징수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의 최저생활 및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과 같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어선,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7.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8.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9.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제4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 14. (생 략) <u><신 설></u>	제40조(압류금지 재산)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u>
<u><신 설></u>	<u>16.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어선,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u>
<u><신 설></u>	<u>17.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u>
<u><신 설></u>	<u>18.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u>

<p><u>•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u></p> <p><u>19.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u></p> <p><u>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u></p> <p>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p> <p>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p> <p>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p>	
---	--